

서울특별시 광화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남창진의원 (대표)발의)

의안 번호	762
----------	-----

발의년월일 : 2015. 10. 22.

발 의 자 : 남창진 의원 (1명)

찬 성 자 : 김진영, 박중화, 진두생, 김영한,
김동욱, 이숙자, 우미경, 이석주,
최호정, 강구덕 의원 (10명)

1. 제안이유

- 본 조례안은 현행 용어와 표현 등을 명확하게 하고 논리에 어긋나는 일부 조항을 수정하는 등 현행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임.

2. 주요내용

- 가. 정의규정의 명확성을 위해 "광화문광장"이란 용어의 정의 중 "필요시 차도 및 보도를 포함한 세종로 전체를 의미한다."를 삭제함 (안 제2조제1호)
- 나. 「지방자치법」 제136조 및 제139조에서는 사용료 및 수수료는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"조형물 등의 이용료"에 대하여는 조례로 규정하도록 함 (안 제13조제2항)
- 다. 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」 및 「저작권법」과 같은 상위법령은 조례 규정과 상관없이 당연히 적용되는 것으로 하위법령에서 상위법령을 준용하지는 않으므로 관련 조항은 수정하기로 함 (안 제15조)
- 라. 「개인정보보호법」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등의 고유식별정보를 생년월일로 대체하기로 함 (안 별지 제2호서식, 별지제3호서식)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「지방자치법」, 「저작권법」, 「개인정보보호법」
- 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없음
- 다. 기 타 : 붙임 신·구조문 대비표

서울특별시 광화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광화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1. "광화문광장"이란 세종로 중앙의 차도와 구분되는 장소를 말한다.

제13조 중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13조(조형물등의 이용료 징수 및 사용)

② 제1항의 이용료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승인한 「공공저작권 사용료 징수규정」에 따르며, 시장은 이용료 징수 등 저작권 관리를 위해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에서 정하는 공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.

제1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15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[별지 제2호서식]과 [별지 제3호서식] 중 “주민등록번호”를 “생년월일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 조문 대비표

현행	개정안
<p>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</p> <p>1. "광화문광장"이란 세종로 중앙의 차도와 구분되는 장소를 <u>말하며, 필요시 차도 및 보도를 포함한 세종로 전체를 의미한다.</u></p> <p>제2호 내지 제4호 <생략></p> <p>제13조(조형물등의 이용료 징수 및 사용)</p> <p>① <생략></p> <p>② <u>제1항의 이용료는 규칙으로 정한다.</u></p> <p>③ ~ ④ <생략></p>	<p>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</p> <p>1. "광화문광장"이란 세종로 중앙의 차도와 구분되는 장소를 <u>말한다.</u></p> <p>제2호 내지 제4호 <현행과 같음></p> <p>제13조(조형물등의 이용료 징수 및 사용)</p> <p>① <현행과 같음></p> <p>② <u>제1항의 이용료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승인한 「공공저작권 사용료 징수규정」에 따르며, 시장은 이용료 징수 등 저작권 관리를 위해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에서 정하는 공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.</u></p> <p>③ ~ ④ <현행과 같음></p>
<p>제15조(준용) 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」 및 「저작권법」 등 <u>관련 법령을 준용한다.</u></p>	<p>제15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<u>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</u></p> <p><u>부칙</u></p> <p><u>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</u></p>

서울특별시 광화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
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1. 비용발생 요인 : 비용발생요인 없음.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- 「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

3. 미첨부 사유

- 「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1항제2호에 해당.

4. 작성자

- 서울특별시의원 남창진